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所得增大에 關한 調査研究

Survey on the Income Increase of the Coastal Fisheries in Korea

朴 正 鎬*

Jeung-Ho Park

目 次

- | | |
|-------------------|------------------|
| I. 序 言 | IV. 沿岸漁業所得의 增大方案 |
| II. 調査研究의 概要 | 1. 問題點 |
| III. 沿岸漁業所得의 實態分析 | 2. 漁業所得의 增大方案 |
| 1. 漁場分布 | V. 結 論 |
| 2. 生産量 및 所得金額 | |

I. 序 言

今日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沿岸漁民의 代名詞는 韓國의인 가난을 代表하며 零細性을 脱皮하지 못하고, 못사는 階層으로 불려 왔으므로 底所得의 經濟的 地位뿐만 아니라, 封建的인 殘滓로서 漁民의 賤視的 낯은 思考는 社會的 兩대접과 더불어 文化面에 있어서도 現代文明의 非受惠地帶로서 落後된 一種의 慢性的 沒落의 傳統社會로 거의 諦念狀態에 이른 政策의 疎外領域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沿岸漁業의 島嶼地域에 있어서 産業立地의 特徵을 보던, 島嶼라는 單位地域은 一般的으로 面積이 좁아 土地資源이 量的으로 貧弱하고, 土質이 척박한 마디 마디의 斷切로 되어 있으며, 水資源의 絶對的 不足을 들 수 있는 바, 面積이 좁은 관계로 江이 없거나 小河川이 흐르더라도 잡아서 조금만 가물이 계속되면 生活用水마저도 不足한 形便이고, 貧弱한 地下資源은 우리나라 本土에서도 마찬가지로 더욱 貧弱한 賦存相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本土의 市場으로부터의 隔離과 域內市場의 狹小性을 이루고 있어, 狹小한 生活空間, 相對的으로 적은 人口, 相對的으로 적은 住民所得으로 因하여 市場의 外延이 좁고 깊이가 낮으며, 交通의 不安定과 社會間接資本의 不備를 들 수 있어 1971年末까지 島嶼의 과반수 以上인 364個의 島嶼에 定期 旅客船이 全혀 運航치 않고 있었던 實情이었고,¹⁾ 孤立性和 封鎖性 및 交通의 未發達은 文化 交流에 制約을 加하여 發展의 主體인 住民으로 하여금 發展에 必要한 情報源으로부터 孤立케 하고 있다. 同時에 住民으로 하여금 停滯的인 價値觀을 갖게 하여 發展의 潜在力을 顯在化하지 못하는 點的 孤立의 狀態에 있는 零細性의 沿岸漁民은 無知와 技術不足, 심지어 方向感覺마저 알지 못하고 現代社會와 遊離된 地域으로서 落後속에서 閉鎖된 채 가난이 宿命처럼 여겨왔던 從來의 惰性에서 거의 大部分이 生氣를 찾지 못하고 하

* 群山大學 教授.

1) 內務部, 새마을運動 10年史, 1980, p.157.

루살이 式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實情들이다.

그러나 沿岸漁業의 島嶼地域에는 非經濟 내지 發展沮害의인 立地因子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豐富한 水産資源, 광활한 海洋空間, 秀麗한 觀光資源 및 水路의 便利 등 많은 發展促進의인 要因들도 同時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發展促進의인 要因들은 傳來的인 沮害因子에 억눌려서 自生的인 發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特히 住民들의 停滯的인 性格으로 말미암아 더욱 期待하기 어려운 實情이었다. 더구나 市場機構에 맡겨두면 沿岸漁業의 島嶼地域은 항상 國民經濟의 發展圈 밖으로 疎外되어 落後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立地的 特徵을 갖고 있는 沿岸漁業 特히 島嶼에 대한 開發에 있어서는 外部로부터의 一定水準 以上の 經濟的 衝擊이 意圖的으로 加해져야 하는 바 1972년부터 새마을事業의 一環으로 沿岸漁業의 島嶼開發에 拍車를 가하여 年次的으로 事業을 實施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背景에서이다. 그러므로 近來 國家基本政策이 農漁民所得增大라는 標題下에 새마을 運動이 展開되었고, 農漁民所得增大 特別事業이 進行되면서부터는 活氣를 띄기 始作하여 우리 나라는 三面이 바다라는 立地的 好惠條件을 勘案한 나머지 沿岸漁業의 活路를 構想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沿岸漁業은 大部分 企業的인 漁業이 아니고, 先祖代代로 定着하여 살아 나오고 있는 地先漁業으로서 바다가 唯一한 生業의 터전으로만 여겨 오던 사람들에 의하여 營爲되어 왔던 것이다. 즉 三面이 바다로 둘러 쌓여 發達된 海岸線을 끼고 西·南海에 많은 섬들을 거느린 우리나라 沿岸漁業은 天惠的인 好條件에도 불구하고 重化學 工業化의 推進과 잇달은 臨海工業團地 助成에 따른 沿岸 汚濁 및 沿岸 海面의 埋立으로 인한 漁場 喪失 등으로 生産面에서 漸次 鈍化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나, 他漁業에 비추어 그 生産量과 漁船勢力 및 이에 從事하는 漁民數 등을 勘案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 水産業의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特히 우리나라 沿岸 漁獲物은 高級 嗜好食品으로서 輸出市場에서 脚光을 받아 外貨獲得의 寵兒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三面이 바다에 接하여 있는 國土位置의 特性을 살려 漁業國家로서의 潛在的 可能性을 開發하는 한편, 前近代的인 採取中心의 漁業을 近代의 養·漁中心의 漁業으로 發展시킴으로써 漁村開發 및 漁家所得 增大를 이룩하고자, 오늘날에 있어서 漁村에서는 生産性 向上에 따른 漁業所得 增大라는 課題가 擡頭되고 있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本人은 沿岸漁業의 開發과 새 漁村建設의 一環策으로서 全北 群山市의 近接地인 古群山列島의 島嶼와 連接된 海洋을 多目的 開發對象으로 하는 沿岸海洋의 利用에 있어서 沿岸漁業의 開發에 力點을 두고 古群山列島에 散在되어 있는 落後된 沿岸漁業을 開發함으로써 底所得 側面에서 提高시키는 所得增大方案을 試圖하는데 本 研究의 目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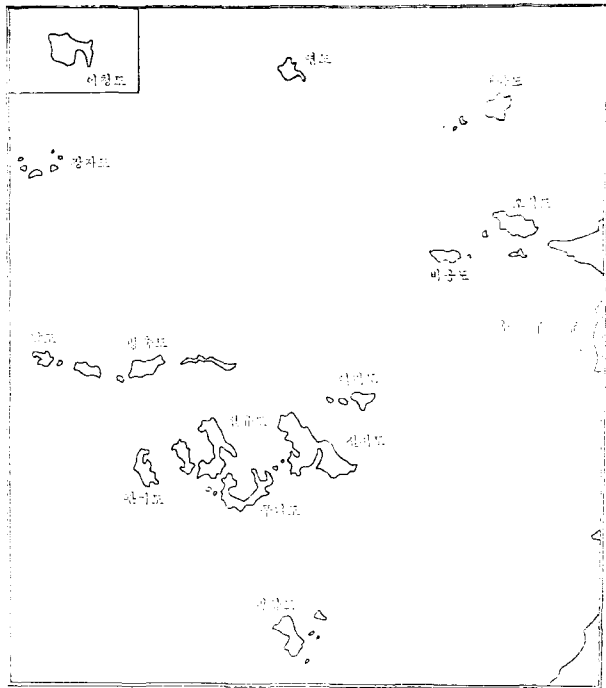
Ⅱ. 調查研究의 概要

古群山列島는 西海岸 中部 遼鳳半島의 西端으로 約 20km, 西쪽 部分에 散在하고 있는 海洋으로 둘러 쌓인 沿岸 島嶼로서 漁場環境은 島嶼周邊에 水深이 얇고 潮汐干滿의 差가 심하여 많은 干拓地로 形成되었으며, 特히 錦江河口에 連하여 錦江에서 流入되는 陸水中에 包含된 많은 營養鹽類와 天

惠的인 自然條件으로 因하여 豊富한 水産資源을 간직하고 있는 有人島 19, 無人島 49로서 東經 126°15'—126°45', 北緯 35°40'—36°10'에 걸친 地域으로 全北 沃溝郡 米星邑에 屬해 있는 島嶼들이다.²⁾ 古群山列島의 主要 島嶼別 位置를 圖示하면 <圖·1>과 같다.

本 研究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古群山列島의 實態把握과 漁業所得面에서 本 島嶼의 地域特性에 알맞게 盛行하고 있는 淺海養殖漁業 및 定置·共同漁業의 免許漁業단을 中心으로 漁場分布, 生産量, 所得額에 關한 實態를 把握하였고, 漁場開發 및 擴大와 新品種開發·獎勵가 所得增大에 미치는 影響의 分析 등을 主要 研究範圍로 하였다.

또한 研究의 遂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研究方法을 活用 하였다.



<圖·1> 古群山列島의 主要島嶼別 位置

1. 調查對象

全北 沃溝郡 米星邑에 屬한 古群山列島에서 漁村契가 組織된 14個 島嶼를 主 調查對象으로 하였으며 漁業別로는 本島嶼 適地漁場에 알맞게 盛行하고 있는 淺海養殖漁業, 定置漁業, 第1種共同漁業, 第3種共同漁業의 免許漁業 등으로 限定하였다.

2. 調查對象期間

漁業別 免許件數는 1981年 3月 1日字로 基準으로 하여 獲得된 것으로 調查基準期間은 1981年 1月 1일부터 1981年 12月 31日까지(1年間) 調查된 資料이다.

3. 調查方法

調查對象 漁村을 直接 踏査하여, 漁民으로 부터 面接을 통해 聽取 및 設問調査를 實施하여 漁業 實態 및 問題點을 把握하였으며, 諸般 資料를 蒐集하였고, 本 研究에 必要한 資料의 補完을 위하여 行政機關, 水産振興院, 水産業協同組合등을 訪問하여 資料를 蒐集·補完하였다.

4. 研究上の 制限點

研究對象地域의 特殊性 때문에 漁民의 非合理的 經營方式으로 正確한 生産量 및 所得金額의 把握

2) 沃溝郡米星邑出張所, 島嶼行政報告, 1982, p. 3.

에는 限界가 있다.

Ⅲ. 沿岸漁業所得의 實態分析

古群山列島는 14個 島嶼의 總戶數가 1,270戶인데 그중 72.9%(926戶)가 漁業에 從事하는 漁家로서 住民들의 大部分이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³⁾ 이를 具體的으로 島嶼別에 따라 漁業所得狀況을 表示하면 <表 1>과 같다.

그러나 本 島嶼의 漁場區域에는 免許漁業만이 盛行하고 있고, 그 중 第2種共同漁業은 操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許可漁業의 操業區域으로서는 充足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本 島嶼

<表 1> 島嶼別 漁業所得狀況(1981年)

도서별	항목		호당소득 (원)	1인당소득 (원)	어가 호수 (戶)	어촌 계원 (名)	어 가 호당소득 (원)	어촌계원 1인당소득 (원)	어가		어촌	
	총호수 (戶)	인구수 (名)							호수 (%)	인구수 (%)	호수 (%)	인구수 (%)
오 식 도	210 (16.5)	1,016 (17.0)	98,990 (0.3)	20,461 (0.3)	114 (12.3)	76 (8.2)	182,351 (0.4)	273,526 (0.7)	54.3		7.5	
비 응 도	47 (3.7)	232 (3.9)	—	—	35 (3.8)	34 (3.7)	—	—	74.5		14.7	
개 야 도	211 (16.6)	954 (15.9)	713,559 (2.0)	157,821 (2.1)	114 (12.3)	210 (22.7)	1,320,711 (3.1)	716,957 (1.9)	54.0		22.0	
연 도	65 (5.1)	338 (5.6)	1,754,277 (4.9)	337,361 (4.4)	56 (6.0)	40 (4.3)	2,036,214 (4.7)	2,850,700 (7.5)	86.2		11.8	
어 청 도	129 (10.2)	471 (7.9)	103,566 (0.3)	28,365 (0.4)	112 (12.1)	55 (5.9)	119,286 (0.3)	242,909 (0.6)	86.8		11.7	
야 미 도	47 (3.7)	248 (4.1)	5,657,447 (15.8)	1,072,177 (14.1)	43 (4.6)	43 (4.6)	6,183,721 (14.3)	6,183,721 (16.3)	91.5		17.3	
신 시 도	85 (6.7)	444 (7.4)	2,201,906 (6.1)	421,536 (5.6)	70 (7.6)	66 (7.1)	2,673,743 (6.2)	2,835,787 (7.5)	82.4		14.9	
선 유 도	130 (10.2)	680 (11.3)	1,774,431 (4.9)	339,229 (4.5)	99 (10.7)	96 (10.4)	2,330,061 (5.4)	2,402,875 (6.3)	76.2		14.1	
무 녀 도	97 (7.6)	488 (8.1)	2,623,443 (7.3)	521,463 (6.9)	81 (8.8)	88 (9.5)	3,141,654 (7.3)	2,891,750 (7.6)	83.5		18.0	
장 차 도	33 (2.6)	141 (2.4)	3,936,454 (11.0)	921,298 (12.1)	30 (3.2)	31 (3.3)	4,330,100 (10.1)	4,190,419 (11.0)	90.9		22.0	
관 리 도	30 (2.4)	126 (2.1)	5,790,500 (16.2)	1,378,690 (18.2)	27 (12.9)	34 (3.7)	6,433,889 (14.9)	5,109,265 (13.5)	90.0		27.0	
방 측 도	43 (3.4)	204 (3.4)	4,306,977 (12.0)	907,843 (12.0)	33 (3.6)	50 (5.4)	5,612,121 (13.0)	3,704,000 (9.8)	76.7		24.5	
말 도	14 (1.1)	66 (1.1)	4,915,857 (13.7)	1,042,758 (13.7)	11 (1.2)	19 (2.0)	6,256,545 (14.5)	3,622,211 (9.5)	78.6		28.8	
비 안 도	129 (10.2)	588 (9.8)	1,961,682 (5.5)	430,369 (5.7)	101 (10.9)	85 (9.2)	2,505,515 (5.8)	2,977,141 (7.8)	78.3		14.5	
계	1,270	5,996	1,612,320	341,502	926	927	2,211,281	2,208,895	72.9		15.5	

註 : () 内の 數値는 百分率임.

3) 沃溝郡, 島嶼現況, 1981, p.10.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所得增大에 關한 調査研究

漁場區域에 알맞는 淺海養殖漁業, 定置漁業, 第1種共同漁業, 第3種共同漁業인 免許漁業만이 營爲되고 있다. 위와 같은 免許漁業과 漁村契를 形成하고 있는 14個 島嶼의 漁業所得의 實態를 漁場分布와 生産量 및 所得金額을 中心으로 考察코자 한다.

1. 漁場分布

本 島嶼의 漁場은 免許를 獲得하여 利用할 수 있는 總面積이 2,055.67ha이며, 第3種共同漁場이 39.5%(813ha), 養殖漁場 36.9%(757.72ha), 第1種共同漁場 14%(290.2ha), 定置漁場 9.5%(194.75ha)의 順으로 第3種共同漁場이 가장 많은 面積을 차지하고 있으나, 養殖漁場도 거의 비슷한 面積率을 占有하고 있는 實情이다. 第3種共同漁場의 面積 比率이 높은 것은 낭장망漁場이 793ha를 占有하여 總漁場面積의 3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낭장망漁業은 오식도, 비응도, 어청도를 除外한 11個 島嶼에서 營爲되고 있어 漁民들의 主業種을 이루는 漁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古群山列島의 代表的인 漁業을 이루고 있다.

養殖漁業中에는 백합養殖場(182.22ha)과 미역養殖場(140ha)이 가장 많은 面積을 占有하고 있으나 實際로 漁業權만 所有한 채, 1975年 以後부터 兩養殖場은 休業狀態에 놓여 있어 漁場利用이 不可能하게 되어 有休狀態下에서 所得源을 찾아볼 수 없는 實情이고, 해삼·전복養殖場(124ha), 반지락養殖場(96.5ha), 가무락 養殖場(81ha) 등이 많은 養殖漁場을 形成하고 있다. 또한 第1種共同漁業은 해삼·전복漁場(250.6ha)이, 定置漁場은 죽방렴漁場(180ha)의 面積이 많은 便이다.

島嶼別로는 신시도(268.5ha), 비안도(503.1ha)가 많은 漁場面積을 保有하고 있으며, 말도(61.75ha), 어청도(80ha)는 적은 便이다. 이는 養殖品種이 多樣한 漁場으로, 沿岸陸地에 가까운 신시도, 선유도, 무너도, 개야도, 비안도 등이 漁場面積이 많은 便이며, 반대로 定置·第1種共同漁場이 盛行하는 外洋에 位置한 水深이 깊은 곳인 어청도, 말도, 관리도 등은 적은 便이다.

島嶼別·漁業別 漁場의 分布 面積을 表示하면 <表2-1>, <表2-2>, <表2-3>과 같다.

도서별	어업별			합 계	%
	양식어업	계 1종 공동어업	계 3종 공동어업		
오 식 도	46.12 (6)	30.0 (1)	10.0 (1)	86.12 (8)	4.2
비 응 도	—	—	—	—	—
개 야 도	54.0 (7)	—	60.0 (3)	114.0 (10)	5.5
연 도	79.0 (3)	5.0 (1)	50.0 (5)	134.0 (9)	6.5
어 청 도	—	80.0 (3)	—	80.0 (3)	3.9
야 미 도	15.0 (1)	—	120.0 (4)	135.0 (5)	6.6
신 시 도	208.5 (9)	—	60.0 (2)	268.5 (11)	13.1

수 산 경 영 른 집

선 유 도	50.0 (7)	10.0 (2)	80.0 (3)	—	140.0 (12)	6.8
무 녀 도	61.0 (7)	10.0 (1)	90.0 (3)	—	161.0 (11)	7.8
장 자 도	—	39.2 (3)	62.0 (3)	—	101.2 (6)	4.9
관 리 도	15.0 (3)	20.0 (1)	55.0 (3)	9.0 (1)	99.0 (8)	4.8
방 축 도	25.0 (3)	55.0 (2)	92.0 (7)	—	172.0 (12)	8.4
말 도	5.0 (1)	21.0 (1)	30.0 (2)	5.75 (1)	61.75 (5)	3.0
비 안 도	199.1 (19)	20.0 (1)	104.0 (4)	180.0 (6)	503.1 (30)	24.5
계	757.72 (66)	290.2 (16)	813.0 (40)	194.75 (8)	2,055.67 (130)	—
%	36.9	14.1	39.5	9.5	—	100.0

註 : ()안의 數字는 면허건수임.

<表 2-2>

島嶼別 漁業別 養殖漁場面積

(單位 : ha)

도서별	어업별	양 식 어 업										계	%
		반지락	가무락	새고락	피조개	백합	굴	해삼	전복	해태	미역		
오 식 도		10.0 (1)	20.0 (2)	—	—	8.12 (2)	8.0 (1)	—	—	—	—	46.12 (6)	6.1
비 응 도		—	—	—	—	—	—	—	—	—	—	—	—
개 야 도		24.0 (3)	—	5.0 (1)	10.0 (1)	—	15.0 (2)	—	—	—	—	54.0 (7)	7.1
연 도		—	—	—	—	—	—	79.0 (3)	—	—	—	79.0 (3)	10.4
어 청 도		—	—	—	—	—	—	—	—	—	—	—	—
야 미 도		—	—	—	15.0 (1)	—	—	—	—	—	—	15.0 (1)	2.0
신 시 도		17.5 (2)	31.0 (4)	—	—	—	—	10.0 (1)	10.0 (1)	140.0 (1)	208.5 (9)	27.5	
선 유 도		15.0 (2)	10.0 (1)	10.5 (1)	—	—	3.5 (1)	—	11.0 (2)	—	50.0 (7)	6.6	
무 녀 도		30.0 (3)	10.0 (1)	—	—	—	10.0 (1)	—	11.0 (2)	—	61.0 (7)	8.0	
장 자 도		—	—	—	—	—	—	—	—	—	—	—	
관 리 도		—	—	—	—	—	—	5.0 (1)	10.0 (2)	—	15.0 (3)	2.0	
방 축 도		—	—	—	—	—	—	25.0 (3)	—	—	25.0 (3)	3.3	
말 도		—	—	—	—	—	—	5.0 (1)	—	—	5.0 (1)	0.7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所得增大에 關한 調査研究

비안도		10.0 (1)	15.0 (2)		174.1 (16)					199.1 (19)	26.3	
계		96.5 (11)	81.0 (9)	30.5 (4)	25.0 (2)	182.22 (18)	36.5 (5)	124.0 (9)	42.0 (7)	140.0 (1)	757.72 (66)	—
%		12.7	10.7	4.0	3.3	24.1	4.8	16.4	5.5	18.5	—	100.0

註: ()안의 數字는 玆허전수임.

<表 2-3>

島嶼別 漁業別 定置·共同 漁場面積

(單位: ha)

도서별	어업별	제1종 공동어업		제3종 공동어업			정 치 어업		계	%
		해삼전복	기타(도수나잡)	낭장망	삼각망	건각망	각 망	죽방렴		
오 식 도		—	30.0 (1)	—	—	10.0 (1)	—	—	40.0 (2)	3.1
비 응 도		—	—	—	—	—	—	—	—	—
개 야 도		—	—	60.0 (3)	—	—	—	—	60.0 (3)	4.6
연 도		5.0 (1)	—	50.0 (5)	—	—	—	—	55.0 (6)	4.2
어 청 도		80.0 (3)	—	—	—	—	—	—	80.0 (3)	6.2
야 미 도		—	—	120.0 (4)	—	—	—	—	120.0 (4)	9.3
신 시 도		—	—	60.0 (2)	—	—	—	—	60.0 (2)	4.6
선 유 도		10.0 (2)	—	80.0 (3)	—	—	—	—	90.0 (5)	6.9
무 녀 도		10.0 (1)	—	90.0 (3)	—	—	—	—	100.0 (4)	7.7
장 자 도		29.6 (2)	9.6 (1)	62.0 (3)	—	—	—	—	101.2 (6)	7.8
관 리 도		20.0 (1)	—	55.0 (3)	—	—	9.0 (1)	—	84.0 (5)	6.5
방 축 도		55.0 (2)	—	82.0 (5)	10.0 (2)	—	—	—	147.0 (9)	11.3
말 도		21.0 (1)	—	30.0 (2)	—	—	5.75 (1)	—	56.75 (4)	4.4
비 안 도		20.0 (1)	—	104.0 (4)	—	—	—	180.0 (6)	304.0 (11)	23.4
계		250.6 (14)	39.6 (2)	793.0 (37)	10.0 (2)	10.0 (1)	14.75 (2)	180.0 (6)	1,297.95 (64)	—
%		19.3	3.0	61.1	0.8	0.8	1.1	13.9	—	100

註: ()안의 數字는 玆허전수임.

수 산 경 영 론 집

2. 生産量 및 所得金額

年間 總生産量은 1,476.16%으로서 總生産量에 대한 第3種共同漁業이 64.9%(953.56%), 養殖漁業 29.4%(432.9%), 第1種共同漁業 4.4%(64.66%), 定置漁業 1.3%(19.04%)의 順位인데, 漁場占有의 比例率보다 第3種共同漁業과 養殖漁業은 현저한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生産量이 가장 높은 第3種共同漁業인 낭장망漁業이 總生産量의 64.7%(95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養殖漁業에서는 반지락養殖漁業(165.6%), 해태養殖漁業(126%), 고무락養殖漁業(79.4%)이 많은 生産量을 나타내고 있으나, 特히 해태養殖漁業은 漁場占有率에 比하여 높은 生産高를 보이고 있으며, 第1種共同漁業과 定置漁業은 少量의 生産高를 보이고 있다. 또한 島嶼別로는 總生産量에 대하여 무녀도 14%(205.3%), 선유도 12%(176.5%), 비안도 11.5%(168.9%), 신시도 11.1%(163.4%), 야미도 10.3%(151.4%)의 順으로 大體로 生産高가 높은 便이나, 말도 2.7%(39.16%), 어청도 0.5%(8%)는 낮은 傾向이다.

島嶼別·漁業別 生産量을 表示하면 <表3-1>, <表3-2>, <表3-3>과 같다.

所得金額은 年間 2,047,646천원으로 年間 總所得金額에 대하여 第3種 共同漁業이 78.2%(1,601,680천원), 養殖漁業 17.3%(353,436천원), 定置漁業 2.3%(46,720천원), 第1種 共同漁業 2.2%(45,

<表 3-1> 島嶼別 漁業別 生産量 (單位: %)

도서별	어업별			정치어업	합 계	%
	양식어업	제 1종 공동어업	제 3종 공동어업			
오 식 도	38.4	30.0	0.98	—	69.38	4.7
비 응 도	—	—	—	—	—	—
개 야 도	54.0	—	72.0	—	126.0	8.6
연 도	7.9	0.5	60.0	—	68.4	4.6
어 청 도	—	8.0	—	—	8.0	0.5
야 미 도	7.4	—	144.0	—	151.4	10.3
신 시 도	91.4	—	72.0	—	163.4	11.1
선 유 도	79.5	1.0	96.0	—	176.5	12.0
무 녀 도	96.3	1.0	108.0	—	205.3	14.0
장 자 도	—	12.56	74.4	—	86.96	5.9
관 리 도	30.5	2.0	66.0	0.88	99.38	6.8
방 측 도	2.5	5.5	99.38	—	107.38	7.3
말 도	0.5	2.1	36.0	0.56	39.16	2.7
비 안 도	24.5	2.0	124.8	17.6	168.9	11.5
계	432.9	64.66	953.56	19.04	1,470.16	—
%	29.4	4.4	64.9	1.3	—	100.0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所得增大에 關한 調査研究

〈表 3-2〉 島嶼別 漁業別 養殖漁業 生産量 (單位:%)

도서별	어업별			양 식 어 업								계	%
	반치락	가무락	새고막	피조개	백합	굴	해삼전복	해태	미역				
오 식 도	17.2	19.6	—	—	—	1.6	—	—	—	38.4	8.9		
비 응 도	—	—	—	—	—	—	—	—	—	—	—		
개 야 도	41.2	—	4.9	4.9	—	3.0	—	—	—	54.0	12.5		
연 도	—	—	—	—	—	—	7.9	—	—	7.9	1.8		
어 청 도	—	—	—	—	—	—	—	—	—	—	—		
야 미 도	—	—	—	7.4	—	—	—	—	—	7.4	1.7		
신 시 도	30.0	30.4	—	—	—	—	1.0	30.0	—	91.4	21.1		
선 유 도	25.7	9.8	10.3	—	—	0.7	—	33.0	—	79.5	18.4		
무 녀 도	51.5	9.8	—	—	—	2.0	—	33.0	—	96.3	22.2		
장 자 도	—	—	—	—	—	—	—	—	—	—	—		
관 리 도	—	—	—	—	—	—	0.5	30.0	—	30.5	7.0		
방 축 도	—	—	—	—	—	—	2.5	—	—	2.5	0.6		
말 도	—	—	—	—	—	—	0.5	—	—	0.5	0.1		
비 안 도	—	9.8	14.7	—	—	—	—	—	—	24.5	5.7		
계	165.6	79.4	29.9	12.3	—	7.3	12.4	126.0	—	432.9	—		
%	38.3	18.3	6.9	2.8	—	1.7	2.9	29.1	—	—	100.0		

〈表 3-3〉 島嶼別 漁業別 定置·共同漁業 生産量 (單位:%)

도서별	어업별			제1종 공동어업			제3종 공동어업			정치어업		계	%
	해삼전복	기타 (도수나잠)		낭장망	삼각망	전각망	각 망	죽방렴					
오 식 도	—	30.0	—	—	—	0.98	—	—	30.98	3.9			
비 응 도	—	—	—	—	—	—	—	—	—	—			
개 야 도	—	—	72.0	—	—	—	—	—	72.0	7.0			
연 도	0.5	—	60.0	—	—	—	—	—	60.5	5.8			
어 청 도	8.0	—	—	—	—	—	—	—	8.0	0.8			
야 미 도	—	—	144.0	—	—	—	—	—	144.0	13.9			
신 시 도	—	—	72.0	—	—	—	—	—	72.0	7.0			
선 유 도	1.0	—	96.0	—	—	—	—	—	97.0	9.3			
무 녀 도	1.0	—	108.0	—	—	—	—	—	109.0	10.5			
장 자 도	2.98	9.6	74.4	—	—	—	—	—	85.98	8.4			
관 리 도	2.0	—	66.0	—	—	—	0.88	—	68.88	6.6			

수 산 경 영 른 집

방	축	도	5.5	-	98.4	0.98	-	-	-	104.88	10.1
말		도	2.1	-	36.0	-	-	0.56	-	38.66	3.7
비	안	도	2.0	-	124.8	-	-	-	17.6	144.4	13.9
계			25.06	39.6	951.6	0.98	0.98	1.44	17.6	1,037.26	-
%			2.4	3.8	91.8	0.1	0.1	0.1	1.7	-	100.0

810천원)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生産量과 比較하여 볼 때 大同小異하여 所得金額은 生産量에 比例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生産量과 所得面에서는 第3種共同漁業과 定置漁業이 收益性이 높다고 볼 수 있고, 養殖漁業과 第1種共同漁業은 낮은 傾向이다. 그 理由로서는 第3種共同漁業과 定置漁業은 魚類를 對象으로 營爲되기 때문에 貝類 및 定着性 水産動植物을 對象으로 하는 養殖漁業과 第1種共同漁業보다는 魚類가 貝類보다 單位魚價가 높기 때문이다. 養殖業의 경우에 있어서도 單位價格이 海苔가 높기 때문에 海苔가 반지락보다 훨씬 收益性이 높은 것이다.

또한 백합養殖場과 미역養殖場은 광활한 漁場面積을 確保하면서도 所得源이 全然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백합의 경우는 1975년부터 集團廢死하여 그후 休業中에 있는 實情으로 1976년까지는 散發的으로 營爲되었으나 1977年以後 行政官廳의 指示로 漁場回復時까지 休業狀態에 놓이게 됨으로써 所得이 없는 狀態였다. 그런데 集團廢死의 原因은 大體로 漁場의 長期使用으로 底質이 老朽化되었고 백합의 노출선이 높아져 夏季의 高水溫에 의한 廢死와 도피방지를 위한 그물의 중복은 大量發生에 의한 密殖으로 潮流소통이 저해되었고, 기생충이 發生하여 種貝場에서부터 오염된 것을 移殖하여 한 개의 廢死에 대한 부식물은 集團廢死를 야기시켰다. 미역의 경우, 수하식미역養殖으로 大量生産을 試圖하였으나 그 結果는 1975年以後 미역價格이 下落되었으며, 島嶼의 特殊性 때문에 運搬費支出이 많았으며, 不足人力에 의한 人件費의 過多支出이 그 原價를 補償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廢業狀態에 있었다. 그 代表的인 例는 횡경도(신시도 관할)라고 볼 수 있다. 漁業別로는 第3種共同漁業인 낭장망漁業이 總所得金額의 77.5%(1,586,000천원), 해태養殖漁業이 10.8%(220,500천원)로서 높은 所得源을 보였으며, 그 外에도 피조개養殖漁業(2.1%), 第1種共同漁業인 해삼·전복漁業(2%)을 들 수 있으며, 島嶼別로는 養殖·第3種共同漁場이 광활한 야미도(256,900천원), 무너도(254,474천원), 비안도(253,057천원), 선유도(230,676천원)는 大體로 所得이 높은 便이나, 定置·第1種共同漁場을 營爲하는 어청도, 말도 등은 낮은 傾向이다.

具體的으로 島嶼別·漁業別 所得金額을 表示하면 <表4-1>, <表4-2>, <表4-3>과 같다.

그러므로 第3種共同漁業인 낭장망漁業은 生産量(951.6%) 및 所得金額(1,586,000천원)이 他業種에 比하여 월등히 높았으나, 漁場限界에 到達하여 漁場擴大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海苔養殖業이 生産量(126%)에 比하여 所得金額(220,500천원)이 월등히 良好한 事業이므로 적극적으로 漁場 擴大를 장려하여 開發할 有望業種이라고 볼 수 있고, 特히 所得源이 높은 피조개養殖漁業은 살포식으로 행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漁場限界에 이르렀기 때문에 垂下式養殖漁業으로 養殖技法을 轉換하는 積極적인 獎勵가 必要하다. 그러면 生産量 및 所得金額이 가장 높은 낭장망漁業을 하나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所得增大에 關한 調査研究

〈表 4-1〉 島嶼別 漁業別 所得金額 (單位: 千圓)

도서별			어업별				합 계	%
			양식어업	제 1 종 공동어업	제 3 종 공동어업	정치어업		
오	식	도	9,948	3,000	7,840	—	20,788	1.0
비	응	도	—	—	—	—	—	—
개	야	도	30,561	—	120,000	—	150,561	7.3
연		도	13,193	835	100,000	—	114,028	5.6
어	청	도	—	13,360	—	—	13,360	0.7
야	미	도	25,900	—	240,000	—	265,900	13.0
신	시	도	67,162	—	120,000	—	187,162	9.1
선	유	도	69,006	1,670	160,000	—	230,676	11.3
무	녀	도	72,804	1,670	180,000	—	254,474	12.4
장	자	도	—	5,903	124,000	—	129,903	6.3
관	리	도	53,335	3,340	110,000	7,040	173,715	8.5
탕	축	도	4,175	9,185	171,845	—	185,200	9.0
달		도	835	3,507	60,000	4,480	68,822	3.4
비	안	도	6,517	3,340	208,000	35,200	253,057	12.4
계			353,433	45,810	1,601,680	46,720	2,047,640	—
%			17.3	2.2	78.2	2.3	—	100.0

〈表 4-2〉 島嶼別 漁業別 養殖漁業 所得金額 (單位: 千圓)

도서별			어업별									합 계	%													
			양 식 어 업																							
			간지	락	가	무	락	새	고	막	외	조	개	백	합	굴	해	삼	전	복	해	태	미	역		
오	식	도	3,440	4,508	—	—	—	—	—	—	—	—	—	—	2,000	—	—	—	—	—	—	—	—	—	9,948	2.8
비	응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개	야	도	8,240	—	1,421	17,150	—	—	—	—	—	—	—	—	3,750	—	—	—	—	—	—	—	—	—	30,561	8.7
연		도	—	—	—	—	—	—	—	—	—	—	—	—	—	—	—	—	—	—	—	—	—	—	13,193	3.7
어	청	도	—	—	—	—	—	—	—	—	—	—	—	—	—	—	—	—	—	—	—	—	—	—	—	—
야	미	도	—	—	—	25,900	—	—	—	—	—	—	—	—	—	—	—	—	—	—	—	—	—	—	25,900	7.3
신	시	도	6,000	6,992	—	—	—	—	—	—	—	—	—	—	—	—	1,670	52,500	—	—	—	—	—	—	67,162	19.0
선	유	도	5,140	2,254	2,987	—	—	—	—	—	—	—	—	—	875	—	57,750	—	—	—	—	—	—	—	69,006	19.5
무	녀	도	10,300	2,254	—	—	—	—	—	—	—	—	—	—	2,500	—	57,750	—	—	—	—	—	—	—	72,804	20.6
장	자	도	—	—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도	—	—	—	—	—	—	—	—	—	—	—	—	—	—	—	—	—	—	—	—	—	—	—	—
방	축	도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산 경 영 론 집

말	도	-	-	-	-	-	-	835	-	-	835	0.2
비	안	도	2,254	4,263	-	-	-	-	-	-	6,517	1.9
계			33,120	18,262	8,671	43,050	-	9,125	20,708	220,500	353,436	-
%			9.4	5.2	2.4	12.2	-	2.6	5.8	62.4	-	100.0

<表 4-3> 島嶼別·漁業別 定置·共同漁業 所得金額 (單位: 千圓)

도서별	어업별	제1종공동어업		제3종공동어업			정치어업		계	%	
		해삼전복	기타(도수나잡)	낭장망	삼자망	진각망	가 망	죽방렴			
오	식	도	-	3,000	-	-	7,840	-	-	10,840	0.6
비	응	도	-	-	-	-	-	-	-	-	-
개	야	도	-	-	120,000	-	-	-	-	120,000	7.1
연		도	835	-	100,000	-	-	-	-	100,835	5.9
어	청	도	13,360	-	-	-	-	-	-	13,360	0.8
야	미	도	-	-	240,000	-	-	-	-	240,000	14.2
신	시	도	-	-	120,000	-	-	-	-	120,000	7.1
선	유	도	1,670	-	160,000	-	-	-	-	161,670	9.5
무	너	도	1,670	-	180,000	-	-	-	-	181,670	10.7
장	자	도	4,930	960	124,000	-	-	-	-	129,963	7.7
관	리	도	3,340	-	110,000	-	-	7,040	-	120,380	7.1
방	축	도	9,185	-	164,000	7,840	-	-	-	181,025	10.7
말		도	3,507	-	60,000	-	-	4,480	-	67,987	4.0
비	안	도	3,340	-	208,000	-	-	-	35,200	246,540	14.6
계			41,850	3,960	1,586,000	7,840	7,840	11,520	35,200	1,694,210	-
%			2.4	0.2	93.6	0.5	0.5	0.7	2.1	-	100.0

의 例로서 年間收支狀況을 나타내 보면 <表5>와 같다.

以上과 같이 考察해 본 結果, 漁業別 또는 島嶼別로서 生産量과 所得金額이 높게 나타난 漁業이나 島嶼는 漁業別·島嶼別 漁場의 單位面積當(ha當) 生産量과 所得金額의 算出 結果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즉 生産量에 있어서는 海苔養殖業(3,000kg), 반지락養殖業(1,716kg), 낭장망漁業(1,200kg) 등이 漁業面에서 높은 生産高를 보이며, 島嶼別로는 무너도(1,275kg), 신시도(1,272kg), 선유도(1,272kg), 야미도(1,121kg)가 높은 生産高로 나타나고 있다. 所得金額에 있어서 漁業別로는 海苔養殖漁業이 40.2%(5,250,000원), 낭장망漁業15.3%(2,000,000원), 피조개養殖漁業13.2%(1,722,000원)의 높은 比率로 나타나고 있는 點이며, 島嶼別로는 야미도 12.9%(1,969,630원), 관리도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所得增大에 關한 調査研究

〈表 5〉 남장망漁業의 收支現況(1981年) (單位: 톤당)

月 別	漁 業 收 益		漁 業 費 用		純 利 益 (원)
	漁獲量(kg)	金額(원)	項 目	金額(원)	
4	141.15 (15.6)	119,950 (9.6)	漁具費	247,500 (23.6)	
5	127.65 (14.1)	165,100 (13.2)	기름代	304,300 (29.1)	
6	56.25 (6.2)	100,100 (8.0)	소금	54,750 (5.2)	
7	103.65 (14.4)	154,850 (12.3)	人件費	365,000 (34.9)	
8	139.20 (15.4)	204,900 (16.3)	紙 袋	75,500 (7.2)	
9	173.10 (19.1)	250,200 (19.9)			
10	165.45 (18.2)	259,850 (20.7)			
計	906.45	1,254,950	計	1,047,050	207,900

註: ()內的 數値는百分率임.

〈表 6-1〉 漁業別 漁場의 單位面積當 生産量 (單位: kg/ha)

어업별	양 식 어 업									제 1 중 공동어업		제 3 중 공동어업			정치어업	
	반지락	가무락	새꼬막	피조개	백합	굴	해삼 전복	해태	미역	해삼 전복	도수 나잠	남장망	삼각망	진강망	각망	죽방렴
생산량	1,716	980	980	492	—	200	100	3,000	—	100	1,000	1,200	98	98	98	98
%	16.9	9.6	9.6	4.8	—	2.0	1.0	29.5	—	1.0	9.8	11.8	1.0	1.0	1.0	1.0

〈表 6-2〉 島嶼別 漁場의 單位面積當 生産量 (單位: kg/ha)

도 서 별	오식도	비응도	개야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너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비안도
생 산 량	889	—	1,105	510	100	1,121	1,272	1,261	1,275	859	1,004	624	624	513
%	7.9	—	9.9	4.6	0.9	10.0	11.4	11.3	11.4	7.7	9.0	5.6	5.7	4.6

〈表 7-1〉 漁業別 漁場의 單位面積當 所得金額 (單位: 원/ha)

어업별	양 식 어 업									제 1 중 공동어업		제 3 중 공동어업			정치어업	
	반지락	가무락	새꼬막	피조개	백합	굴	해삼 전복	해태	미역	해삼 전복	도수 나잠	남장망	삼각망	진강망	각망	죽방렴
소득 금액	342,212	225,457	284,295	1,722,000	—	250,000	167,000	5,250,000	—	167,000	100,000	2,000,000	784,000	784,000	781,017	195,556
%	2.6	1.7	2.2	13.2	—	1.9	1.3	40.2	—	1.3	0.8	15.3	6.0	6.0	6.0	1.5

수 산 경 영 론 집

<表 7-2>

島嶼別 漁場의 單位面積當 所得金額

(單位: 원/ha)

도 서 별	오식도	비웅도	개야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비안도
소득금액	266,513	—	1,320,711	850,955	167,000	1,969,630	1,456,514	1,647,686	1,580,584	1,283,626	1,754,697	1,076,744	1,114,526	769,170
%	1.7	—	8.7	5.6	1.1	12.9	9.5	10.8	10.4	8.4	11.5	7.1	7.3	5.0

11.5%(1,754,697원), 선유도 10.8%(1,647,686원), 무녀도 10.4%(1,580,584원)의 比率順으로 나타내어 이들 島嶼는 所得이 높은 便이다.

具體的으로 漁業別·島嶼別 漁場의 單位面積(ha)當 生産量을 表示하면 <表6-1>, <表6-2>와 같고, 漁業別·島嶼別 漁場의 單位面積(ha)當 所得金額을 表示하면 <表7-1>, <表7-2>와 같다.

한편 月別로 操業狀況을 본다면 養殖漁業의 경우는 3월에 24.7%(106.9%)로서 生産高가 가장 높으며, 8월이 0.5%(2.2%)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大體로 1~4월(10.8~24.7%) 사이가 盛漁期를 이루고 있으며, 夏季인 8월, 9월(0.5~0.6%)은 不振한 漁期로 나타났다. 定置共同漁業은 주로 3~10월 사이에 操業이 行하여지고 있고, 冬季는 休業狀態이며, 夏季와 秋季인 8~10월 사이가 盛漁期로서 16.3~20.4%(169.07~211.6%)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本 島嶼는 年中 操業이 可能하여 夏季와 秋季(11.7~14.8%)가 主 漁業時期이나 9월, 10월(14.3~14.8%)인 秋季가 盛漁期이고, 冬季로 접어들면서 不振한 漁期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漁業別·月別 生産量 및 所得金額을 表示하면 <表 8>과 같다.

<表 8>

漁業別·月別 生産量 및 所得金額

어업별	월별 생산액	월별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양식업	생산량 (%)	(10.8)	(17.6)	(24.7)	(12.0)	(2.3)	(1.0)	(16.4)	(0.5)	(0.6)	(1.1)	(4.0)	(9.0)	100.0
	소득금액 (천원)	46.7	76.2	106.9	51.9	10.0	4.3	71.0	2.2	2.6	4.8	17.3	39.0	432.9
정지·양식업	생산량 (%)	—	—	(0.3)	(9.7)	(13.1)	(8.2)	(12.3)	(16.3)	(19.7)	(20.4)	—	—	100.0
	소득금액 (천원)	—	—	3.11	100.62	135.88	85.06	127.58	169.07	204.34	211.6	—	—	1037.26
합	생산량 (%)	(3.1)	(5.0)	(7.3)	(10.4)	(10.0)	(6.2)	(13.4)	(11.7)	(14.3)	(14.8)	(1.2)	(2.6)	100.0
	소득금액 (천원)	45.58	73.51	107.32	152.9	147.02	91.15	197.0	172.01	210.23	217.58	17.64	38.22	1,470.16
계	소득금액 (천원)	63,477	102,382	149,478	212,955	204,765	126,954	274,384	239,575	292,813	303,052	24,572	53,239	2,047,646

註: ()内の 數値는 百分率임.

Ⅳ. 沿岸漁業所得의 增大方案

古群山列島에서 盛行하고 있는 淺海養殖漁業, 定置漁業, 第1種共同漁業, 第3種共同漁業과 14個島嶼의 漁場分布, 生産量 및 所得金額의 實態에 관한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諸問題點을 把握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改善策으로 漁業所得의 增大方案을 提示하여 보기로 하겠다.

1. 問題點

1) 本島嶼의 漁場實態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免許를 獲得하여 漁業權을 所有한 채 利用하고 있는 既存漁場의 面積은 2,055.67ha이며, 앞으로 適地로서 活用될 수 있는 開發可能漁場이 458ha이고 보면, 總適地漁場은 2,513.67ha인 셈이다. 즉 總適地漁場에 比하여 既存漁場은 81.8%이고, 開發可能漁場은 18.2%이므로, 現在 既存漁場은 總適地漁場의 82% 밖에 利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漁場活用을 위한 漁場擴大가 必要하고, 또한 開發可能漁場의 增加로 漁場擴大에 따른 養殖漁業의 경우 總事業費가 387,700천원이 推計되는데 零細漁民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財源調達問題가 야기된다.

2) 海苔養殖漁業은 漁場單位面積(ha)當 5,250,000원의 高所得을 나타내며 生産量에 比하여 所得金額이 월등히 良好한 事業인데, 그 間에는 海苔養殖에 대한 認識度가 낮아 未開發狀態였으며 近來와서 開發增大事業中 經濟性이 높이 評價되는 事業이기에 積極的으로 獎勵되어야 할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3) 漁業權을 所有한 既免許된 漁場인 백합養殖場과 미역養殖場이 休業으로 因하여 漁場이 有休狀態에 있으므로 所得源이 全然 없기 때문에 새로운 漁場活用方案이 問題視된다.

4) 第3種共同漁業인 낭장망漁業은 漁場面積이 가장 넓고, 生産量 및 所得金額도 他業種에 比하여 가장 높기 때문에 本島嶼의 主從業種을 이루고 있으나, 現在操業統數 以上 더 增加될 수 없기 때문에, 免許를 받지 않는 狀態의 操業統數가 增加되어 不正漁業이 助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制度的인 側面에서 問題가 된다.

5) 比較的 收益性이 높은 살포식 피조개養殖場은 事實上 그 限界點에 到達했는 바, 이에 대한 養殖技法의 代替方案이 問題되며, 돛·우렁챙이·홍합 등의 新品種開發 普及이 問題視되고 있다.

2. 漁業所得의 增大方案

1) 漁場開發 및 擴大

漁場의 開發과 擴大는 生産量을 增加하여 所得增大를 超來하는 要因이 된다. 즉 本島嶼에서는 既存漁場을 擴充할 수 있는 開發可能適地漁場을 多분히 保有하고 있으며, 漁場擴大가 可能한 곳으로, 아직까지 行政官廳으로부터 免許處分이 이루어지지 않은 漁場으로서 免許獲得後 利用할 수 있는 漁場은 既存漁場(2,055.67ha)보다 22.3%가 增加되는 458ha의 漁場을 助成할 수 있다. 그 中 養殖漁場은 338ha(73.8%)와 定置共同漁場은 120ha(26.2%)로서 既存養殖漁場(757.72ha)과 既存定置·共同漁場(1,297.95ha)보다 各各 44.6%, 9.3%씩 增加될 수 있다.

具體적으로 島嶼別·漁業別 開發可能漁場의 面積을 表示하던 <表9-1>과 같다.

수 산 경 영 른 집

〈表 9-1〉

島嶼別 漁業別 開發可能漁場의 面積

(單位 : ha)

도서별	어업별						소계	%	1중 등어 도수 나잡	공정 치어 업 각망	소계	%	합계	%
	양	식	어	업										
	반지락	가무락	굴	해삼 전복	해태	미역								
오 식 도	20 (1)	10 (1)	20 (1)	—	—	—	50 (3)	14.8	—	—	—	—	50 (3)	10.9
비 응 도	10 (1)	—	—	—	—	—	10 (1)	3.0	—	—	—	—	10 (1)	2.2
개 야 도	—	—	—	20 (1)	—	—	20 (1)	5.9	—	—	—	—	20 (1)	4.4
연 도	—	—	—	10 (1)	—	—	10 (1)	3.0	—	—	—	—	10 (1)	2.2
어 청 도	—	—	—	—	—	20 (1)	20 (1)	5.9	—	—	—	—	20 (1)	4.4
야 미 도	—	—	—	—	10 (1)	—	10 (1)	3.0	—	—	—	—	10 (1)	2.2
신 시 도	20 (1)	—	—	—	20 (1)	—	40 (2)	11.8	100 (1)	—	100 (1)	83.4	140 (3)	30.6
선 유 도	10 (1)	—	5 (1)	—	20 (1)	—	35 (3)	10.3	—	—	—	—	35 (3)	7.6
무 너 도	—	—	—	—	8 (1)	—	8 (1)	2.3	—	—	—	—	8 (1)	1.7
장 차 도	—	—	—	—	—	—	—	—	—	—	—	—	—	—
관 리 도	—	—	—	10 (1)	10 (1)	—	20 (2)	5.9	—	10 (1)	10 (1)	8.3	30 (3)	6.5
방 측 도	—	—	—	15 (1)	—	60 (1)	75 (2)	22.2	—	—	—	—	75 (2)	16.4
말 도	—	—	—	10 (1)	—	—	10 (1)	3.0	—	10 (1)	10 (1)	8.3	20 (2)	4.4
비 안 도	—	—	—	—	30 (2)	—	30 (2)	8.9	—	—	—	—	30 (2)	6.5
계	60 (4)	10 (1)	25 (2)	65 (5)	98 (7)	80 (2)	338 (21)	—	100 (1)	20 (2)	120 (3)	—	458 (24)	
%	13.1 17.7	2.2 3.0	5.4 7.4	14.2 19.2	21.4 29.0	17.5 23.7		73.8 100	21.8 83.3	4.4 16.7		26.2 100		100.0

註 : ()안의 數値는 면허 예정전수입.
資料 : 國立水産振興院 群山支院 提供.

이와 같이 開發可能漁場의 擴大는 年間 總生産量을 推計하여 보면 既存漁場의 生産量(1,470.16%)보다 約 3.4배인 4,920.14%를 增加할 수 있고, 養殖漁業에서는 4,818.2%, 定置·共同漁業에서 101.94%를 增産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所得金額도 既存漁場의 所得額(2,047,646천원)에 比하여 35%(711,959천원)가 增加되는 所得을 가져올 수 있게 되며, 養殖漁業과 定置·共同漁業은 各各 686,439천원, 25,520천원의 所得增加를 推計할 수 있다. 그러므로 開發可能漁場의 擴大는 生産量의 增加와 所得增大를 기할 수 있는 方案이 된다.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所得增大에 關한 調査研究

島嶼別·漁業別 開發可能漁場에 따른 生産量과 所得金額을 表示하던 <表9-2>, <表9-3>과 같다.

<表 9-2> 島嶼別 漁業別 開發可能漁場의 生産量 (單位: %)

도서별	어업별	양 식 어 업						소계	%	1종 동어업 도수 나잡	공정 치어업 각망	소계	%	합계	%
		반지락	가무락	굴	해삼 전복	해태	미역								
오 식 도		34.3	9.8	4.0	—	—	—	48.1	1.0	—	—	—	—	48.1	0.97
비 응 도		17.15	—	—	—	—	—	17.15	0.36	—	—	—	—	17.15	0.35
개 야 도		—	—	—	2.0	—	—	2.0	0.04	—	—	—	—	2.0	0.04
연 도		—	—	—	1.0	—	—	1.0	0.02	—	—	—	—	1.0	0.02
어 청 도		—	—	—	—	—	400.0	400.0	8.3	—	—	—	—	400.0	8.13
야 미 도		—	—	—	—	30.0	—	30.0	0.62	—	—	—	—	30.0	0.61
신 시 도		34.3	—	—	—	60.0	2800.0	2894.3	60.07	100.0	—	100.0	98.2	2994.3	60.86
선 유 도		17.15	—	1.0	—	60.0	—	78.15	1.62	—	—	—	—	78.15	1.59
무 녀 도		—	—	—	—	24.0	—	24.0	0.5	—	—	—	—	24.0	0.49
장 자 도		—	—	—	—	—	—	—	—	—	—	—	—	—	—
관 리 도		—	—	—	1.0	30.0	—	31.0	0.64	—	0.97	0.97	0.9	31.97	0.65
방 측 도		—	—	—	1.5	—	1200.0	1201.5	24.94	—	—	—	—	1201.5	24.42
달 도		—	—	—	1.0	—	—	1.0	0.02	—	0.97	0.97	0.9	1.97	0.04
비 안 도		—	—	—	—	90.0	—	90.0	1.87	—	—	—	—	90.0	1.83
계		102.9	9.8	5.0	6.5	294.0	4400.0	4818.2	—	100.0	1.94	101.94	—	4920.14	—
%		2.09	0.2	0.1	0.13	5.98	89.43	—	97.9	2.03	0.04	—	2.1	—	100.0

<表 9-3> 島嶼別 漁業別 開發可能漁場의 所得金額 (單位: 천원)

도서별	어업별	양 식 어 업						소계	%	1종 동어업 도수 나잡	공정 치어업 각망	소계	%	합계	%
		반지락	가무락	굴	해삼 전복	해태	미역								
오 식 도		6,860	2,254	5,000	—	—	—	14,114	2.1	—	—	—	—	14,114	2.0
비 응 도		3,430	—	—	—	—	—	3,430	0.5	—	—	—	—	3,430	0.5
개 야 도		—	—	—	3,340	—	—	3,340	0.5	—	—	—	—	3,340	0.5
연 도		—	—	—	1,670	—	—	1,670	0.2	—	—	—	—	1,670	0.2
어 청 도		—	—	—	—	—	12,000	12,000	1.8	—	—	—	—	12,000	1.7
야 미 도		—	—	—	—	52,500	—	52,500	7.7	—	—	—	—	52,500	7.4
신 시 도		6,860	—	—	105,000	84,000	195,860	28.5	10,000	—	10,000	39.2	205,860	28.9	
선 유 도		3,430	—	1,250	105,000	—	109,680	16.0	—	—	—	—	109,680	15.4	
무 녀 도		—	—	—	42,000	—	42,000	6.1	—	—	—	—	42,000	5.9	
장 자 도		—	—	—	—	—	—	—	—	—	—	—	—	—	—

수 산 경 영 른 집

관 리 도	—	—	—	1,670	52,500	—	54,170	7.9	—	7,760	7,760	30.4	61,930	8.7
방 측 도	—	—	—	2,505	—	36,000	38,505	5.6	—	—	—	—	38,505	5.4
말 도	—	—	—	1,670	—	—	1,670	0.2	—	7,760	7,760	30.4	9,430	1.3
비 안 도	—	—	—	—	157,500	—	157,500	22.9	—	—	—	—	157,500	22.1
계	20,580	2,254	6,250	10,855	514,500	132,000	686,439	—	10,000	15,520	25,520	—	711,959	—
%	2.9	0.3	0.9	1.5	72.3	18.5	—	96.4	1.4	2.2	—	3.6	—	100.0

그러나 開發可能漁場의 增加는 漁場을 擴大시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事業費 充當의 財源調達問題가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所得增大 事業의 一環策으로 國費 20%, 融資 50%, 地方費 10%(道費 5%, 郡費 5%)의⁴⁾ 資金支援의 惠澤을 받을 수 있으므로 自己負擔 20%가 解決되면, 事業擴大는 可能하기 때문에 行政當局과 水産業協同組合의 積極의 配慮가 必要하다. 一般적으로 總事業費中 20%를 人件費로 간주하면 漁民의 自家勞動과 協業勞動으로 人件費를 代替할 수 있고, 自生組織으로 이룩된 各種 契(現金契 8, 喪契 8, 마을基金助成契 21, 合計 37個가 있어 島嶼 平均 3個가 있는 셈)에 의하여 助成된 資金으로 融通함으로써 自己負擔 20%(推計된 總事業費의 養殖業의 경우 82,580천원)는 解決될 수 있다.

2) 海苔養殖漁業의 積極獎勵

海苔養殖漁業은 그간 海苔養殖에 대한 認識度가 낮아 未開發狀態였으나, 漁場單位面積(ha)當 5,250,000원의 가장 高所得을 나타낸 業種이므로, 近來와서 開發增大 事業中 經濟性이 높게 評價되는 事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既存漁場(42ha)보다 2倍以上인 開發可能漁場 98ha를 保有하고 있으며, 年間 總生産量을 推計하여 보면 294%의 높은 生産量을 期할 수 있고, 이에 따라 所得金額도 既所得額(220,500천원) 보다 2.3배인 514,500천원의 高所得을 가져올 수 있다는 點으로 보아 開發할 有望業種中의 하나로 積極적으로 獎勵할 必要가 있다.

3) 有體漁場의 活用

既免許獲得한 미역養殖場과 백합養殖場은 有體狀態로 所得이 없기 때문에 漁場活用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역養殖의 경우 그 間에는 休業狀態이지만 既存漁場 140ha(신시도)와 開發可能漁場 어청도 20ha, 방측도 60ha의 總適地漁場을 새로이 活用한다면 生産量이 4,400%과 所得額 132,000천원을 增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생미역 自體가 低廉하기 때문에, 생미역 自體로 販賣할 것이 아니라 加工施設을 갖추어 調味加工하여 原價를 補償하는 販賣價格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 漁村契를 中心으로 協業事業으로 推進하여 資金調達의 원활화를 기할 때 繼續事業으로 營爲될 수 있어 所得增大가 期待되나, 加工施設을 갖추어 原價를 補償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횡경도(신시도 管轄)일때는 미역뿐만 아니라 貝類와 魷魚의 適地漁場이므로 貝類養殖이나 魷魚를 할 수 있도록 轉業對策을 강구하여 放置된 有體漁場을 活用함으로써 所得增大를 期할 수 있다.

4) 全羅北道, 水産事業執行要領, 1981, p. 61.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所得增大에 關한 調査研究

또한 백합養殖의 경우 漁場回復이 一定水準에 到達時까지 行政官廳(沃溝郡廳)에서 休業命令을 내렸으나 尠大한 養殖場(오식도 8.12ha, 비안도 174.1ha)을 그대로 有休시킬 수 없기 때문에 現在 漁場이 一定水準에 回復된 곳은 漸次的으로 水産振興院의 技術的 支援과 漁業開始의 適否에 의하여 行政官廳은 漁業이 試圖될 수 있도록 適切한 配慮가 必要하며, 未回復漁場은 轉業對策을 마련하여야 하며 一例로 반지락, 가무락, 굴養殖 등 繁殖力이 強한 品種의 養殖패턴으로 轉業함으로써 漁場의 有休狀態를 防止하고 漁場을 活用하여 所得增大를 期할 수 있다.

4) 낭장망漁業의 漁場擴大

낭장망漁業의 漁場擴大는 資源保護上의 問題點을 充分히 檢討하여 資源減少의 現象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點과 漁場間의 重復免許를 피할 수 있는 水面의 最大 活用方案을 考慮하여 制度的으로 現行 水産業法上 水産業法 施行令 第11條 第3項의 水面限界의 延長이 試圖될 수 있다면 漁場擴大에 따른 操業統數가 增加되어 所得增大를 期할 수 있다.

5) 新品種開發에 따른 增殖栽培

本 島嶼에서도 東海岸, 南海岸에서 生産되는 돛, 우렁쟁이, 홍합 등의 養殖適地漁業을 保有하고 있어, 新品種 增殖栽培가 可能하며, 한편 살포식 피조개養殖에서 수하식 피조개養殖을 할 수 있는 適地漁場도 保有하고 있다. 本 島嶼에서 新品種 普及地域 및 漁場面積을 表示하면 <表10>과 같다.

<表 10> 新品種普及 島嶼 및 漁場面積 (單位: ha)

품종 도서별	돛	우렁쟁이	홍 합	수하식 피조개	계
개야도	—	—	5	—	5
연 도	—	—	5	—	5
어청도	5	10	—	—	15
선유도	—	—	—	5	5
장자도	—	—	—	5	5
관리도	—	—	—	5	5
방축도	5	—	—	—	5
달 도	5	—	—	—	5
계	15	10	10	15	50

資料: 國立水産振興院 群山支院 提供.

돛은 外洋에 面한 水域에서 潮流疏通이 빠르고, 上下潮流의 流通이 잘되는 最干潮時 水深은 2m以上 길은 곳으로 썰 및 모래썰인 완만한 傾斜地帶가 適地인데,⁵⁾ 어청도, 달도 방축도가 各 5ha씩 保有하고 있으며, 우렁쟁이는 外洋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으로 海水의 比重이 比較的 높고 水深은 6~10m 되는 곳이며, 底質은 岩礁地帶 또는 사락질로 된 곳이 適地로,⁶⁾ 어청도에 10ha를 保有하고 있고, 홍합은 海水의 疏通이 좋고, 맑은 물이 많이 있는 바위에 集團棲息하며, 水深 5~10m内外에 分布하는 것으로,⁷⁾ 개야도와 연도에 各 5ha씩 保有하고 있다. 피조개는 現在 살포식 피조개 養殖을 行하여 高所得을 기하고 있으나, 適地面積이 限界點에 到達

해서 漁場擴大가 不可能하여 수하식 피조개養殖技法이 導入되어야 할 時點에 이른 것이다. 수하식 피조개養殖은 바닥에서 살포식으로 養成하는 것보다 成長이 빠르고 물속에 있는 時間이 길어 營養

5) 水協中央會, 새어민, 1981年 1月號, p. 68.
 6) 現代海洋社, 現代海洋, 1981年 6月號, p. 94.
 7) 國立水産振興院, 有用貝類養殖, 1972, p. 47.
 8) 문교부, 수산증식, 1978, p. 19.

수 산 경 영 론 집

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成長이 좋아 生産性이 높으며,⁸⁾ 특히 관리도, 장자도, 선유도에서 各各 5ha씩 適地漁場을 保有하고 있다. 그러므로 新品種普及에 따른 適地面積은 뜻이 15ha, 우렁챙이 10ha, 홍합 10ha, 수하식 피조개 養殖 15ha로서 總適地面積은 50ha가 더 增加될 수 있으며, 總適地漁場의 擴大로 因하여 生産量이 增加됨으로써 漁民의 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다.

그러나 新品種 增殖栽培 및 養殖技法의 改良은 漁民에게 充分한 技術指導가 先行되어야 하므로 國立水産振興院技術陣과 行政官廳(沃溝郡廳)의 協助下에 技術普及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研究職으로 하여금 專門指導를 위촉하고 事業別로 特性에 맞는 技術普及指導班을 編成하여 巡廻指導가 實施되어야 한다. 한편 漁民들에게는 水産廳, 水産業協同組合에서 配付되는 各種 技術誌를 利用할 수 있도록 啓蒙이 되어야 한다.

V. 結 論

지금까지 考察한 古群山列島의 沿岸漁業實態를 分析 把握함으로써, 漁業所得의 增大方案에 關한 그 結果를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古群山列島는 14個 島嶼의 總戶數 1,270戶 가운데 72.9%(926戶)가 漁業에 從事하는 漁家로서 住民들의 大部分이 漁業을 營爲하며, 本 島嶼의 漁場區域에 알맞는 淺海養殖漁業, 定置漁業, 第1種共同漁業, 第3種共同漁業인 免許漁業만이 盛行하고 있고, 總漁場의 面積은 2,055.67ha이며, 年間 總生産量은 1,476.16%이고, 所得金額은 年間 2,047,646천원을 나타내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本 島嶼에서는 免許를 獲得한 既存漁場의 面積(2,055.67ha)과 適地漁場으로서 活用될 수 있는 開發可能漁場이 458ha이고 보면, 總適地漁場은 2,513.67ha가 된다. 그러므로 總適地漁場에 對하여 既存漁場은 81.8% 밖에 利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8.2%의 開發可能漁場의 活用을 위해서는 漁場의 開發 및 擴大가 必要하다. 즉 既存漁場을 擴充할 수 있는 開發可能漁場을 多分히 保有하고 있다는 點은 漁場의 開發과 擴大를 試圖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生産量이 增加되고 所得增大를 超來하는 要因이 된다. 따라서 漁場擴大에 따른 財源調達問題는 새마을所得增大事業으로 80%의 資金支援 惠澤을 받을 수 있으므로 自己負擔 20%는 漁民의 自家勞動과 協業勞動으로 人件費로서 代替할 수 있고, 自生組織으로 이룩된 各種契에 의하여 助成된 資金을 融通하여 解決될 수 있다.

海苔養殖漁業은 古간 海苔養殖에 대한 認識度가 낮아 未開發狀態였으나 漁場單位面積(ha)當 5,250,000원의 高所得을 나타내었고, 生産量에 比하여 所得金額이 월등히 良好한 業種이므로 近來와서 開發增大事業中 經濟性이 높히 評價되는 事業이라는 點으로 보아 開發할 有望業種이기에 積極的으로 獎勵할 必要가 있다.

既免許를 獲得한 미역養殖漁業과 白蛤養殖漁業은 광활한 漁場面積을 確保하면서도 有休狀態로 所得源이 全然 없기 때문에 漁場活用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미역養殖의 경우 생미역 自體가 低廉하기 때문에 調味加工하여 原價를 補償할 수 있는 販賣價格이 이루어져야 되고, 漁村契를 中心으로 協業事業을 推進하여 資金調達의 원활화를 기해, 繼續事業으로서 營爲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貝類養殖漁業이나 낭장당漁業으로 轉業對策을 强구하여 有休漁場防止策을 마련하여

沿岸漁業에 있어서의 所得增大에 關한 調查研究

야 될 것이고, 또한 白蛤養殖의 경우는 現在 漁場이 一定水準에 回復된 處는 漸次的으로 漁業開始의 適否에 의하여 漁業이 行하여질 수 있도록 行政官廳은 適切히 配慮할 必要가 있으며, 未回復 漁場은 반지락, 가무락, 굴養殖 등 繁殖力이 強한 品種의 養殖패턴으로 轉業對策을 마련하여 有休 漁場을 活用할 수 있어야 된다.

第3種共同漁業인 낭장망漁業은 漁場面積이 가장 넓고, 生産量 및 所得金額도 他漁業에 比하여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本 島嶼의 主從漁業을 이루고 있으나 漁場이 限界點에 到達하여 現在 操業統數를 增加할 수 없으므로 資源保護的인 側面과 漁場間의 重複免許를 避할 수 있는 水面의 最大 活用方案을 考慮하여 制度的으로 水面限界의 延長이 試圖되어져야만 漁場擴大에 따른 操業統數가 增加될 수 있다.

本 島嶼에서도 東海岸, 南海岸에서 生産되는 鱒, 우렁쟁이, 홍합 등의 養殖適地 漁場을 保有하고 있어 新品種 增殖栽培가 可能하며, 또한 살포식 피조개養殖에서 수하식 피조개養殖을 할 수 있는 適地 漁場도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新品種 開發에 따른 增殖栽培 및 養殖技法의 改良이 切實히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新品種 增殖栽培 및 養殖技法의 改良은 漁民에게 充分히 技術指導가 先行되어졌을 때, 新品種 開發에 따른 普及과 增殖栽培가 이루어짐으로써 漁場擴大로 因하여 生産量이 增大된다.

以上과 같이 古群山列島에 있어서 沿岸漁業 所得의 側面에서 問題點과 對策에 關하여 要約하여 보았으며, 이와 같은 增大方案이 試圖될 때 所得增大가 實現될 수 있을 것이며, 本 論文이 沿岸漁業의 所得增大를 圖謀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면 多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韓國開發問題研究所, 沿岸漁民의 所得增大와 協業化方案研究, 1972.
2. 水産廳, 水産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79年度・1982年度.
3. 沃溝郡, 島嶼現況, 1981.
4. 沃溝郡 米星邑 出張所, 島嶼行政報告, 1982.
5. 韓國自然保存協會, 文化放送 京郷新聞社編, 古群山群島綜合學術調查報告書(1980年度), 1981.
6. 國立水産振興院, 有用貝類養殖, 1972.
7. 張設鎭, 漁村契에 關한 研究, 太和出版社, 1980.
8. 韓國水産經營學會, 法人漁村契 育성과 共同漁場 協業化에 關한 研究, 1978.
9. 李秉鎭, 沿岸漁業論, 1973.
10. 內務部, 새마을運動10年史, 1980.